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안전 시행계획 미수립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교통안전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등에 따라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시·도지사 등은 다음 연도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시행 2018. 12. 18.) 제4조는 구청장이 양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5조는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4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내역

해당연도	수립	공고	부적정 내역
2023	○	○	
2024	X	X	미수립, 미공고
2025	○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